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18조의2제2항제18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"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8조제2항에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・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2(겸영업무) ① (생 략)	제25조의2(겸영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< 신 설>	② 영 제18조의2제2항제18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"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 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말한다.
 ② 영 제18조의2제4항제9호에서 "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1~3. (생략) 	③ "금융위원회가 1~3. (현행과 같음)